#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# 1. 의결주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○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 서명법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,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○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를 할 때,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(안 제36조의2)

# 4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

## 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제2항 후단 중 "것"을 "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2(전자문서를 이용한 신	제36조의2(전자문서를 이용한 신
고) ① (생 략)	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	②
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	
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	
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	
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	
하는 방법으로 하며, 이 경우	
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	
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	
의를 확인할 수 있는 <u>것</u> 을 말한	<u>것으로서</u>
다)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	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
다.	<u>서를 이용한 것</u>
	<b>.</b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# 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 - 1771